

『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이지연 의원 외 11명

2. 제안이유

-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·외유로 인한 부실한 국외연수와 국외연수 과정에서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
-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456(19.2.11.)호와 관련하여 「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(표준안)」이 시달됨에 따라 「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」로 강화하여 규정하고자 기존 규칙은 폐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「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」을 폐지함.

4. 검토의견

- 공무국외여행과 그 관리에 대해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 의회에 대한 시민의 신뢰성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하여 그동안 규칙에 따라 운영되어 왔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은 타당하며 이에 따른 규칙 폐지는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